

1. 식품 자동판매기(Vending Machines) 제품 라벨링 개정안

- 전면이 유리로 되어있는 식품 자동판매기에 진열되는 제품의 전면 (front-of-pack; FOP) 에 표기하는 칼로리 섭취량 정보의 글자의 크기에 대하여 FDA 에서 라벨링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음
 - 법안은 2019년 11월 27일로 발효되었으며, 2021년 7월 1일 부터 개정된 법안을 준수하여야 함

- 기존 법안은,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식품 자동판매기에 진열되는 제품의 전면에 표기하는 칼로리 섭취량 정보의 글자 크기가, 최소한 전면에 표기된 가장 큰 글자 크기의 50%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⁾
 -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제품에 표기된 식품영양정보를 미리 검토하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, 20 개 이상의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는 소유주라면, 자동판매기에 진열 되어있는 각 제품의 칼로리 섭취량을 자동판매기에 스티커 부착 또는 사인 부착 등의 부가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
 -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제품의 앞면을 보고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, 칼로리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전면에 표기할 수 있음

- 개정된 법안은, 해당 칼로리 섭취량 정보의 글자 크기가, 최소한 전면에 표기하는 순중량 표기의 최소 기준 크기²⁾ 에서 150%가 되어야 한다고 새롭게 개정하였음

1) 21 CFR 101.8(b)(2)

2) 21 CFR 101.7(i)

- 소비자가 자동판매기의 전면 유리를 통해서 진열된 제품을 보고 구매할 제품을 선택할 때, 최소한 해당 제품의 섭취 칼로리가 얼마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, 자동판매기의 소유주로 하여금 섭취 칼로리의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, 자동판매기가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제품 전면에 표기하는 칼로리 섭취량 정보가 소비자의 눈에 잘 띄일 수 있게 글자 크기를 크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
- 자동판매기에 진열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, 제품 앞면의 라벨링을 개정된 법안을 준수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

2. 시사점

- FDA는 소비자가 식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순간에, 해당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를 모두 인지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품 자동판매기 제품에 대한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 숙지하고 현지 통관사 및 식품 전문 변호사 등과의 자문을 통해 수출 필요.

3. 관련 웹사이트

<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19/10/28/2019-23276/food-labeling-calorie-labeling-of-articles-of-food-sold-from-certain-vending-machines-front-of>

<저작권자 ©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& kati.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